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4
----------	-----

2025. 10. 14.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2025. 9. 30.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 1. 1.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칙 개정을 통해 이관 및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5호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2.~ 9.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제명의 개정과 관련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반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하였으나 제명은 누락된 것으로 보임.

-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조문 배열 정비 및 구체화를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5조) 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면 마치 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모두 정하는 조례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목적규정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5조는 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안 제26조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선정 대리인 운영’ 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문내용(제29조~제30조)을 제7장으로 구분하여 이관하고, 제7장의 ‘납세자권리현장’ 을 제8장으로, 제8장 ‘제도개선 과제발굴’ 은 제9장을 추가하여 이동 조정함.
 - 다만, 제1항의 “선정 대리인 신청서” 는 누락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7조는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방식의 명확성은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서, 본 조항은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소유 재산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임. 다만, 본 조항

의 제목을 “소유 재산 산정” 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평가 가액” 이라고 규정한 사항과 동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으로 조항의 제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8조**는 관련 자료 제공에 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5조를 재기재한 것이며, 법 제93조제4항,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9조**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재기재한 것으로 임기종료 후에도 지정된 사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해당 부서에 유선질의 결과, 선정 대리인 위촉요건으로 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0조**는 우수 활동자 포상·우대 규정은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징계처분 이력자·청탁자 배제 규정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예산 범위 내 실비 보전적 수당 지급은 전문성 있는 인력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의 공공성은 잃지 않도록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1조는 사건 기록·관리에 관한 것으로 실무상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 부칙과 관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관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된 사항들이 이관되는 조문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¹⁾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정대리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 위임에 부합하면서 실효성과 법제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나, 실익없는 조항 나누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1) 부칙

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6조부터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 선정 대리인 업무개요

○ 제도정의

-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권리구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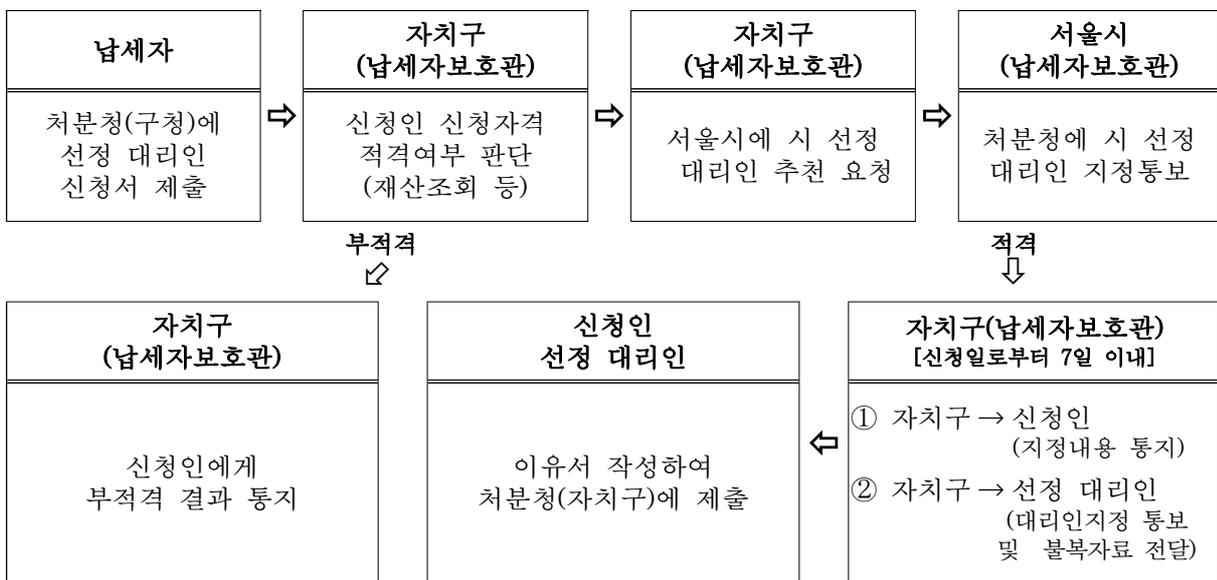
○ 지원대상: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 개인: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매출액 3억 원 이하

○ 신청방법: 시세는 서울시, 구세는 자치구에 신청

- 시세 지원 세목(6개):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시세 중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세 지원 세목(2개): 재산세 · 등록면허세

○ 처리절차



- 선정 대리인 위촉·관리 및 규모
 - 서울시에서 일괄 통합 위촉·관리
 - 규모: 20명(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11명)
- 선정 대리인 수당: 건당 150천 원
 - 2025년 관악구 선정 대리인 예산액: 450천 원 (3건×150천 원)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12. 24.>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